

전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단4537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5. 6. 17. (피고 A에 대하여) 2015. 8. 19. (피고 B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727,736원 및 그 중 10,727,648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7. 체결된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4. 7. 18. 접수 제124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원고는 2013. 2. 26. 자영업에 종사하는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450,000원, 보증기한 2018. 3. 18.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장차 피고 A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이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3. 19.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부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45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4. 7. 24.경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냈고, 원고는 2014. 11. 26. 피고 A을 대위하여 부안신용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10,737,148원을 변제하였는데, 2014. 12. 30.까지 9,500원을 회수하여 잔존하는 대위변제금은 10,727,648원(= 10,737,148원 - 9,500원)으로 되었고, 2014. 12. 30.까지확정손해금 88원이 발생되었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9.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한편, 2004. 5. 1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목록 기재 각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 4. 피고 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4. 7. 17.자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4. 7. 18. 접수 제12478호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 A은 피고 B의 이모이다. 마.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안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10,727,736원(= 2014. 12. 30. 기준 잔존 대위변제금 10,727,648원 + 확정손해금 88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10,727,648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0.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할 것이 필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참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피고 A의 부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10,737,148원을 대위변제한 2014. 11. 26.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일인 2014. 7. 17. 기준으로 위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은 제1항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제1항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A은 2014. 7. 24.부터 부안신용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원고가 2014. 11. 26. 부안신용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제3. 가.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A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10,737,148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도 피고 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바, 제1항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을 하고 이 사건 각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B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항변 요지

피고 B의 모친인 C가 2004. 5. 13.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 B이 이전 거주지에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출 장애사유가 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모인 피고 A에게 일정기간 동안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2013. 1. 4.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3. 1. 25. 우리은행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45,5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1. 26. 전세금 65,000,000원에 전주시 완산구 D 빌라를 임차하여 위 빌라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이후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게 되어 더 이상 무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서 피고 A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피고 B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을 하게 되었고 2014. 7.18.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다.

위 업무는 모두 C가 주도하였고, 피고 B은 전주에 거주하면서 피고 A과 거의 왕래가 없으므로 피고 A이 부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45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이 사해행위라고 인정될지라도 피고 B은 선의이므로 이를 피고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A에게로 2013. 1. 4.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7. 17.자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을 원인으로 2014. 7. 18.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것과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2013. 1. 25. 우리은행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45,5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1. 26. 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기간 2013. 1. 26.부터 2015. 1. 25.까지로 하여 전주시 완산구 D건물 301호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 B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제1항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 B은 모친인 C를 통하여 이모인 피고A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점, ② 아직 위 D건물 301호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2014. 7. 24. 직전인 2014. 7.17.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그 다음 날인 2014. 7. 18.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마쳐진 점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이 정상적인거래관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B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1)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2)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말소등기 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훈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부안군 대 325㎡

2. 부안군

세멘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51.08㎡

이 상.

